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40호 2015. 9. 25. (금요일)

<b>선 람</b>	<b>기 관 의 장</b>
----------------	----------------------------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78호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079호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하동군 조례 제2080호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하동군 조례 제2081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하동군 조례 제2082호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하동군 조례 제2083호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하동군 조례 제2084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하동군 조례 제2085호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	37
○	하동군 조례 제2086호	하동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8
○	하동군 조례 제2087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	하동군 조례 제2088호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6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99차).....	50
○	하동군 고시 제2015-6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알림.....	52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814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4
○	하동군 공고 제2015-815호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	하동군 공고 제2015-819호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60
○	하동군 공고 제2015-820호	하동군 소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	하동군 공고 제2015-821호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67
○	하동군 공고 제2015-823호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71
○	하동군 공고 제2015-825호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74

<b>회 람</b>									
----------------	--	--	--	--	--	--	--	--	--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40호 2015. 9. 25. (금요일)

<b>선 람</b>	<b>기 관 의 장</b>
----------------	----------------------------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78호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079호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하동군 조례 제2080호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하동군 조례 제2081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하동군 조례 제2082호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하동군 조례 제2083호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하동군 조례 제2084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하동군 조례 제2085호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	37
○	하동군 조례 제2086호	하동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8
○	하동군 조례 제2087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	하동군 조례 제2088호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6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99차).....	50
○	하동군 고시 제2015-6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알림.....	52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814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4
○	하동군 공고 제2015-815호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	하동군 공고 제2015-819호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60
○	하동군 공고 제2015-820호	하동군 소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	하동군 공고 제2015-821호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67
○	하동군 공고 제2015-823호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71
○	하동군 공고 제2015-825호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74

<b>회 람</b>									
----------------	--	--	--	--	--	--	--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25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78호

###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를 “「아동복지법」 제3조”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한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다문화 가정,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활동
  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역사회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 4 ) 제 440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1. ----- 「아동복지법」 제3조 -----, -----.</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단서 신설&gt;</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 ----- -----, -----,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1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다문화 가정,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lt;신 설&gt;</p>	<p>제11조(보조금 등 지원) ① -----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인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 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신 설>	5. <u>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u> 6. <u>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역사회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u>

하 동 군 공 보

( 6 ) 제 440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2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79호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현장활동비의 지급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현장활동비는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실비변상) ①·② (생략)  <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4조(실비변상)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u>제4조의2(현장활동비의 지급 등) ①</u>  <u>제4조제3항에 따른 현장활동비는 월                      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u>  <u>②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한다.</u></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25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80호

###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 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4장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형	개 정 안
<p>제9조(협의회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증재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u>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u></p> <p>8.·9. (생략)</p> <p><u>&lt;신설&gt;</u></p>	<p>제9조(협의회기능) -----</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8.·9. (현행과 같음)</p> <p><u>제12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p> <p><u>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u></p> <p><u>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u></p> <p><u>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u></p> <p><u>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u></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형	개 정 안
<p>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li> <li>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li> <li>3.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li> </ol> <p>② ~ ⑤ (생 략)</p>	<p>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를 협의할 것을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 --.</p> <p>②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25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81호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를 “경우에는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할”을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된 다음날부터 남은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계약금”을 “보증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를 “예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을 예치하지 못 할 경우에는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u></p> <p>1. 2.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u>일할 계산으로 한다.</u></p> <p>③ (생 략)</p>	<p>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 -----<u>경우에는 반환한다.</u></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 <u>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된 다음날부터 남은기간에 대하여 일할</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u>계약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 할 <u>때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여야 한다.</u></p>	<p>제17조(계약보증금 및 보증인) ① - ----- <u>보증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계약금</u> ----- ----- <u>예치하여야</u> -----.</p> <p>② 제1항의 보증금을 예치하지 못 할 <u>경우에는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u></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25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82호

###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실조사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인력 절감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조(사실조사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 16 ) 제 440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2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83호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하동군세 기본 조례」 ”를 “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로 한다.

제3조 중 “ 「하동군세 기본 조례」 ”를 “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로 한다.

제6조제1호가목 중 “8,000원”을 “10,000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100조제2항”을 “법 제84조의3제2항”로 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 「경상남도세조례」 ”를 각각 “ 「경상남도  
도세 조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형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및 「 <u>하동군세 기본 조례</u>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 ----- 「 <u>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u> 」-----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 <u>하동군세 기본 조례</u> 」 제5조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 ----- ----- 「 <u>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u> 」----- -----.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b>8,000원</b> 나. (생 략) 2 (생 략)	제6조(세율) ----- ----- -----. 1. ----- 가 ----- <b>10,000원</b>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0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 -----.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건축물	제12조(세율) ----- ----- -----. 1. (현행과 같음) 2.-----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25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84호

###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2.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하 동 군 공 보

( 20 ) 제 440 호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 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하 동 군 공 보

( 22 ) 제 440 호

[별표 1]

###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 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 함, 계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 력구, 지중정확 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가스관 송유관 전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기관 전기통신관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만공), 전력 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확장치 (어스앵커, 암 거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 고관, 간판(돌 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 내표지, 현수 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					광고탑, 광고관, 간판(돌출간판 을 제외한다)
기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 하 동 군 공 보

( 24 ) 제 440 호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신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경우</li> <li>2.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li> </ol>
<p>제3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p>	<p>제3조(점용의 허가신청) &lt;삭제&gt;</p>
<p>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p>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되, 해당 연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lt;개정 1999.10.23.조1540&gt;</p> <p>④ 법 제7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따른다.</p>	<p>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p> <p>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p> <p>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⑤ 제9조(준용) 신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6조(점용료의 조성)</b>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u>조정산식</u>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b>제5조(점용료의 조정)</b>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b>제7조(점용료의 감면)</b> ① 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p> <p>② 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p> <p>③ 법 제44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법 제44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p> <p>2. 법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p> <p>3. 법 제44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p>	<p><b>제6조(점용료의 감면)</b>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p> <p>② (삭제)</p> <p>③ (삭제)</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의2(변상금 징수)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을 도로점용징수의 예에 따른다. &lt;개정 1999.10.23.조1540&gt;</u></p>	<p>제7조의2(변상금 징수) &lt;삭제&gt;  <u>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u>  <u>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u>  <u>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u></p>
<p><u>제8조(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8조(징수의 위임) &lt;삭제&gt;  <u>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u></p>
<p><u>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9조(시행규칙) &lt;삭제&gt;  <u>제9조(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u></p>

하 동 군 공 보

( 30 ) 제 440 호

< 현 행 >

[별표 1]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 제4조관련 )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것	전 주		1개	1년	600
	전주와 유사한 것				900
	공중전화				24,100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기타의 관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직경 0.1m이하	길이1m	1년	150
		직경 0.1m초과 0.2m이하			3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6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90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2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1500
		직경 1m초과			3000
	기타의 관	직경 0.1m이하	길이1m	1년	200
		직경 0.1m초과 0.2m이하			450
		직경 0.2m초과 0.4m이하			9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1,3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800
		직경 0.8m초과 1.0m이하			2,250
		직경 1m초과			4,500

하 동 군 공 보

( 31 ) 제 440 호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 용 단 위	기 간 단 위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일시설치한 것(1월미만 점용)	표시 면적 1㎡	1일	100
		기 타	표시 면적 1㎡	1년	15,000
	시설안내표지		1개	1년	12,50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설치한것	표시 면적 1㎡	1일	50
		기타의용도			100
	아 취	도로횡단	표시 면적 1㎡	1년	30,000
		기 타			15,000
	4.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2층인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 를 곱한 금액		
3층인건축물			토지가격에 0.06 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 를 곱한 금액		
<u>진 입 로</u>				<u>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u>	
기 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 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기타 이와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건축물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
		2층인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 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 를 곱한 금액



## 하 동 군 공 보

( 32 ) 제 440 호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단 위	기 간 단 위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 를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 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8. 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시 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 면적 1㎡	1일	10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및식 재배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 비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출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 =1,900원)  
5의 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양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6.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6의 2.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위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 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 (랜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 커, 압거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 고관, 간판(돌 출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	광고탑, 광고관, 간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하 동 군 공 보

( 34 ) 제 440 호

내표지, 현수막, 이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들출간판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시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이치	도로횡단	표시 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기타		20,7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b>진입로 출입로</b>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하 동 군 공 보

( 35) 제 440 호

8. 공사용 판자 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타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 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 하 동 군 공 보

( 36 ) 제 440 호

### <현 행>

[별표 2]

#### 점용료 조정산식 (제6조 관련)

산출점용료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
100퍼센트이상2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25/100+(증가율-500/100)×5/1000}]

### <개정안>

[별표 2]

#### 점용료 조정산식 (제4조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25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

하동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25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86호

### 하동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식품가공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의 수요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5호의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165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각 과정에 대한 농업인 등의 시설 또는 공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농업인 등의 관리에 대한 감시와 생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방안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사업 종사자에게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고 군수가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식품안전 추진계획)**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생산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생산·판매 정보 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농업인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생관리 등)**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유와 의견교류) 군수는 주민이나 농업인 등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지원정책을 위하여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3. 식품의 안전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7조와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하 동 군 공 보

### ( 44 ) 제 440 호

#### 3.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의 제1호사목에 따른다.

####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25일

## 하 동 군 수 율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87호

###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을 “제15조”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 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 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제15조 ----- ----- ----- -----</p>
<p>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 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li> <li>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li> <li>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li> <li>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 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li> </ol>	<p>&lt;삭 제&gt;</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u></p> <p>1.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p> <p>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p> <p>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p>	
<p>제30조(이의신청)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30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u></p>



하 동 군 공 보

( 48 ) 제 440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2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88호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연면적”을 “건축물 중 연면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p> <p>① <u>군수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건축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p> <p>② ~ ⑥ (생략)</p>	<p>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p> <p>① <u>「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u>군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u></p> <p>② ~ ⑤ (생략)</p>	<p>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p> <p>-----<u>건축물 중 연면적</u>-----</p> <p>-----</p> <p>-----</p> <p>-----</p> <p>-----</p> <p>-----</p> <p>-----</p> <p>-----</p> <p>-----</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 50 ) 제 440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2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088호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연면적”을 “건축물 중 연면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p> <p>① <u>군수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건축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p> <p>② ~ ⑥ (생략)</p>	<p>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p> <p>① <u>「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u>군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u></p> <p>② ~ ⑤ (생략)</p>	<p>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p> <p>-----<u>건축물 중 연면적</u>-----</p> <p>-----</p> <p>-----</p> <p>-----</p> <p>-----</p> <p>-----</p> <p>-----</p> <p>-----</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99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17.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길 11-34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9.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하 동 군 공 보

( 53 ) 제 440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183-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길 11-34	20150917	20080402	법대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79-6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윗길 19-1	20150917	20080402	마을고유명칭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연막윗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 산 48-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458-23	20150917	20090702	예전의 고속도로 기념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22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 로 858-21	20150917	20090702	동학전적지인 고성산 지남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37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835-11	20150917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변경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사막2길 74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 로 340	20150917	20070618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을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15-69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합 계	2개소			45,000		
고하지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98-1번지 일원	침수 위험	나	36,000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상승 으로 내부 배제 불량에 따른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	신규
나팔항 지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899-5번지 일원	해일 위험	나	9,000	해안고가 낮아 폭풍.해일 발생 시 범람으로 인한 주택 및 도로 침수 피해	신규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고하지구, 나팔항지구).

2015. 9. 18.

하 동 군 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도면

**고하지구**

지형도면



현황사진(유역도, 침수지역 현황도 등)





( 56 ) 제 440 호

나팔항지구

지형도면



현황사진(유역도, 침수지역 현황도 등)



하동군 공고 제2015-815호

##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위탁 방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 10조)  
→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제13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로 함.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복지과, 전화880-2342, FAX 880-2349, sonss67@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제13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탁 운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p>	<p>제10조(위탁 운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제13조의 수탁기관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p>

하동군 공고 제2015-819호

##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를 육성·지원하여 군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지역사랑 운동을 전개,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가능한 하동발전협의회 추진사업(안 제2조)
  - 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하동군수에게 제출(안 제3조)
  - 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를 반환(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0월 4일까지 하동군(참조:기획감사실, 전화 880-2014, FAX 880-2019, zamzari77@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조례제정안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를 육성·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군정주요 정책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결집하여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사업 등) 하동군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이하 “하동발전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정주요정책에 대한 정책토론회
2. 군정주요정책 모니터링 활동
3. 지역사회 봉사활동
4.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5. 그 밖에 하동군 군정 발전을 위한 활동

제3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하동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제2조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하동발전협의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결산보고 등) ① 하동발전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동발전협의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하동발전협의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하동군 조례 제2015-820호

##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15조 중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하동군 공고 제2015-821호

##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안 이유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의 인정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제1조(목적)
  - 나. 제2조(용어의 정의)
  - 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라. 제4조(행정규칙)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복지과, 전화 055-880-2344, FAX 055-8802349, [bebelo123@korea.kr](mailto:bebelo123@korea.kr))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 68 ) 제 440 호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수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하 동 군 공 보

( 70 ) 제 440 호

4. 수도, 가스, 전기 등 공급이 그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5-823호

##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

2. 폐지이유

- 1990년대 추진하였던 국제화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하여 당시 내무부 표준안인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 『부처별세계화추진기획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그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지자체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 존치목적 상실하였으며,
-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하동군(참조: 기획감사실, 전화880-2015, FAX 880-2019, [zamzari77@korea.kr](mailto:zamzari77@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 72 ) 제 440 호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붙임]**

경상남도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9 월 22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가.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원 확보 관련 사항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안전 환경 구축 필요
3.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 및 놀이시설 관리범위를 정함
  - 나.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9조)
    -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관리주체의 순찰 및 행위금지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안전관리 의무이행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관리주체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전점검결과기준 미달시 관리주체의 조치의무 및 행정지도 사항을 정함

마.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업무의 분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사항을 정함
- 안전총괄부서는 업무의 총괄·조정사항을 정함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하동군(참조: 안전총괄과, 전화 055-880-2258, FAX 055-880-2249, e-mail birani@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관련법령

( 76 ) 제 440 호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